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35호
- 나. 발 의 자 : 김경 의원 등 10명
- 다.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경제 진흥 활성화 및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ESG 경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등의 친환경적 ESG 관리 조항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 수립 및 추진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2)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탄소중립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별도 작성내역 없음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ESG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자 발의됨.

2. ESG 경영의 등장 배경과 의미

- ‘ESG’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핵심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임.
- 그리고 ‘ESG 경영’은 기업이나 기관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방식임.
- 현재 ESG 경영을 통한 지속적 성장은 전 세계적 가치로 통용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나 기업은 협업과 투자 대상을 ESG 경영지표와 국제표준 인증 획득 여부를 토대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추세임.
- 특히 세계적 투자사인 미국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핑크(Larry Fink)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2020년)하면서 글로벌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본격화되었음.

- 예를 들어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이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¹⁾가 발생하는 등 기업을 넘어 공공기관까지 ESG 경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3. 서울경제진흥원의 ESG 경영 추진 현황과 개정안 검토

- 국내적으로 ESG 경영에 관한 법령은 없으나, 서울시는 지난 2024년 3월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ESG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ESG 조례’ 제7조²⁾를 인용하여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ESG 경영 및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재단은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석탄 발전소 투자한 한전, 탄소감축 노력 부족” 해외 투자자들 '경고'(조선비즈, 2020.2.25.)

2) 제7조(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ESG)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ESG 조례’의 제정 이후 기획조정실이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ESG 경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서울시 21개 출자·출연 기관은 이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을 적용하는 중임.
- 특히 동 진흥원은 ESG 경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추진방향이 포함된 ‘2024 ESG 경영 추진계획’과 ‘2024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을 추진 중임.

< 서울경제진흥원 ESG 경영 중장기 로드맵 >



- 이와 같이 동 진흥원을 포함한 서울시 21개 출자·출연 기관이 이미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에 제정된 ESG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에 서울시 21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동 진흥원의 ESG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별 출연기관에 대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이미 ‘ESG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별 조례에 중복 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